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회)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2027년 5월 27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도시정비기획단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9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4명, 6급 3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청년 주거지원 정책 기능 강화를 위하여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기획조정실 1개 담당관을 주택토지실 1개 과로 개편하며,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2027년 5월 27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고, 공항건설 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증원한 한시정원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6년 6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4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국토교통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에 제2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의2. 청년 주거정책의 총괄·조정 및 지원

제5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4(도시정비기획단) ① 국토교통부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7년 5월 27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도시정비기획단을 둔다.

② 도시정비기획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도시정책관이 겸임한다.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후계획도시(「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후계획도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정비 기본방침의 수립
2.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협의 및 승인
3.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협의

5. 노후계획도시선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협의

6.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7. 노후계획도시 정비 관련 지원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④ 도시정비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⑤ 도시정비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9조제5항 중 “2024년 6월 30일”을 “2026년 6월 30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5월 27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토교통부에 둔다.

별표 4 제1호2)의 조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주택토지실 1개 과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 제5호 중 “2024년 6월 30일”을 “2026년 6월 30일”로 하고, 같은 표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59조제6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7년 5월 27일)

총계	3
일반직 계	3

4급 또는 5급 이하

3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5]

국토교통부의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58조의3제4항 및 제58조의4제4항
관련)

1.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존속기한: 2025년 3월 31일)

총계	13
일반직 계	12
3급 또는 4급 이하	12
특정직 계	1
경정	1

2. 도시정비기획단(존속기한: 2027년 5월 27일)

총계	9
일반직 계	9
3급 또는 4급 이하	9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주택토지실) ①·② (생략)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1. (생략) <u><신 설></u> 22. ~ 59. (생략) <u><신 설></u>	제12조(주택토지실)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21. (현행과 같음) <u>21의2. 청년 주거정책의 총괄·조정 및 지원</u> 22. ~ 59. (현행과 같음) <u>제58조의4(도시정비기획단) ① 국토교통부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7년 5월 27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도시정비기획단을 둔다.</u> <u>② 도시정비기획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도시정책관이 겸임한다.</u> <u>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u>1. 노후계획도시(「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후계획도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정비 기본방침의 수립</u>

	<u>2.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u> <u>협의 및 승인</u> <u>3.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u> <u>및 실무위원회의 설치 및 운</u> <u>영에 관한 사항</u> <u>4.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u> <u>별정비구역의 지정 협의</u> <u>5. 선도지구의 지정 협의</u> <u>6.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필요한</u> <u>지원에 관한 사항</u> <u>7. 노후계획도시 정비 관련 지</u> <u>원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u> <u>한 사항</u> <u>④ 도시정비기획단에 두는 공무</u> <u>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u> <u>⑤ 도시정비기획단에 두는 공무</u> <u>원의 직급별 정원은 국토교통부</u> <u>령으로 정한다.</u>
제59조(한시정원) ① ~ ③ (생략)	제59조(한시정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삭 제	⑤ -----
⑤ 공항건설 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6월 30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토교통	-----

	--- 2026년 6월 30일-----

부에 둔다.

<신 설>

-----.

⑥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을 위
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
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5월 27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토교통
부에 둔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50